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2월호

Contents

알리는말씀

-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금융감독원)

회계정보

- 금감원 질의 회신 수정 폐기
- 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 규칙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제 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 ②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 ③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I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 현재 이러한 문제는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75개사**가 애로 호소 (유가증권시장 15개사 + 코스닥시장 60개사, 2.25. 기준)
 -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 중국 종속회사 감사 지연 사유 >

- ① 중국 내 종속회사 담당 직원의 **회사 출근이 불가**하여 결산 지연
- ② 중국 내 각 성(省)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중국 종속회사 회계감사 불가
- ③ 중국 파견 한국 직원 또는 감사인이 **국내 복귀 후 2주간 자가격리**되어 후속 업무 지연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주총회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II 정기주주총회 개최 지원방안

1.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문제 관련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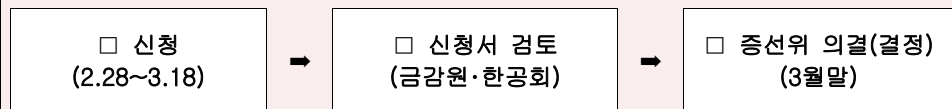
(1) 문제점

- (재무제표)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감사보고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업무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올해는 '20.3.30.)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 지원방안 (2.26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완료)

- ◆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지연제출)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 신청 및 심사 절차 >



- (신청)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관련 → 금감원
- 기타 외감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관련 → 한공회
-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참고2, 3 / “신청방법” 참고4 참조)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 ① 신청기간을 2.28일부터 3.18일까지*로 하며,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주총 1주전임을 감안하여 3.18일까지 신청
- ② 신청사실을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기관별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대상 회사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금융감독원 (www.fss.or.kr)	Dart 시스템	02-3145-7975
			02-3145-7761
			02-3145-7765
기타 외부감사 대상 (IFRS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한국공인회계사회 (www.kicpa.or.kr)	이메일 (assu@kicpa.or.kr)	02-3149-0171
			02-3149-0175
			02-3149-0176

* 기타 일반상당 : (한국상장사협의회) 02-2087-7190 (코스닥협회) 02-368-4585 (코넥스협회) 02-785-9000

□ (검토)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①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
-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1) (회사) ①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3)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심사기관이 거래소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증선위 의결) 금감원·한공회의 검토결과를 증선위에 상정(3월말 예상)하여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의 제재를 면제합니다.

○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29일)에서 45일 연장된 6.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상법 위반 및 정기배당 지급 애로 관련 (법무부)

(1) 재무제표 승인 관련

□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하면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이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 연기·속행 관련

□ 상법(제372조) 상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연기·속행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로 가능

※ 연기회 또는 계속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초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고, 최초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상법 관련 조문 >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 결과에 따라 정기배당 가능

○ 이러한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3. 거래소 상장규정 위반 관련 (거래소)

□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경과시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3월중)

* 코넥스시장의 경우, 관리종목 제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 유예 근거 마련 예정

4. 주주총회 자율분산 인센티브 관련 (예탁원, 거래소)

□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

< 인센티브 주요내용 >

- ①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1.0점)**
- ②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 공시우수법인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수수료 등 면제, 의무교육 이수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적용
- ③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 주총 정족수 미달로 거래소 상장규정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예외 가능

III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를 위한 안내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 주주총회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 주주의 **전자투표·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합니다.

* 확진자가 사업장 내 주주총회장을 방문할 경우, 사업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가능 회사 현황 ('20.2월)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기타	합계
전자투표	461	1,064	10	125	1,660
전자위임장	419	1,040	10	78	1,547

□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①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합니다. (참고5 “기관별 전자투표 이용방법” 참조)

한국예탁결제원 “K-eVote” evote.ksd.or.kr	미래에셋대우 “플랫폼V” v.miraeassetdaewoo.com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 vote.samsungpop.com
		
<p>•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p>	<p>• ‘주주로그인’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p>	<p>• ‘서비스가입’ 클릭 → 가입절차 진행* → 로그인 (공인인증서/핸드폰인증)</p>

* 증권업무를 이용하던 기존 이용자도 별도 신규가입 필요

②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예절 등 공공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

□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 · 폐기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 · 폐기('20. 2. 7.)

[출처: 금융감독원, 2020. 2. 7]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하였습니다.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7-059	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		폐기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의 질의요약 중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 1 조의 3(개정 법령에서는 삭제된 조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신요약 중 외부감사법 상의 회계처리기준 규정을 종전 외감법 제 13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개정 외부감사법 상의 조항(제 5 조 제 1 항)으로 수정 	수정

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020. 1. 28]

개요

1. 개요

□ (제출대상) 외감법 제 23 조제 4 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 천억원 이상인 모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소유경영 분리여부 무관)

□ (제출방법) 정기총회 종료 후 14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 전자제출(하단 "제출방법" 참고)

□ (제출서류) 외감법 시행령 제 27 조제 6 항에 따라 ①공문, ②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③대표이사 변동현황, ④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⑤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


⇒ 제출의무 미준수시, 증선위는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및 감사인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외감법 §29①)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2.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1) (시스템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 접속하여 회사의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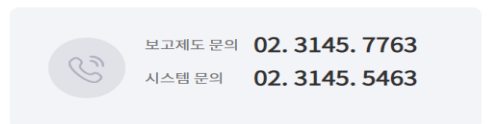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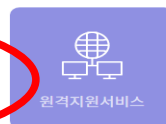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금융은 튼튼하게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과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개황 입력) [회사·제출서류]-[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선택하고 1. 회사개황을 입력합니다. (1-1 번~1-8-2 번)

<회사개황 입력 화면>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제출서류** 감사인·제출서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감사인 선임보고서
의감대상 재의신청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상장법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 (대형비상장법인)
감사계약 해지보고

보고제도 문의 02.3145.7761
시스템 문의 02.3145.5463

1. 회사개황

1-1 회사명	운영서비스	1-2 회사 고유번호	00000000
1-1-1 회사명 변경 여부	선택	1-1-2 변경 전 회사명	
1-3 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3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16-82-14464
1-5 대표자명		1-6 전화번호	XXX-XXXX-XXXX
1-7 주소(우편번호)			
1-8 당기 사업연도	제 기 YYYYMM - YYYYMM 개월		
1-8-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선택		
1-8-2 결산기 변경 내용 (1-8-1에서 '예'인 경우)			

(3) (소유주식현황 입력) 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작성합니다.

<소유주식현황 입력 화면>

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2-1 지배주주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본인 주식수 지분율(%)

비고

2-2 특수 관계인

주주명 지배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2-1)지배주주*에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회사 지배주주의 지배주주명,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의미


※ (예) 직전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19.12.31.기준 지배주주 현황을 기재

2) (2-2)특수관계인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주명, 지배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행을 삽입한 후 기재

(4) (대표이사 변동현황) 3. 직전전사업연도 이후 대표이사 변동 현황을 작성합니다.

<대표이사 변동현황 입력 화면>



◦ 직전전 사업연도(2 기전) 이후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있는 경우 퇴임한 해당 대표이사명, 취임일 및 퇴임일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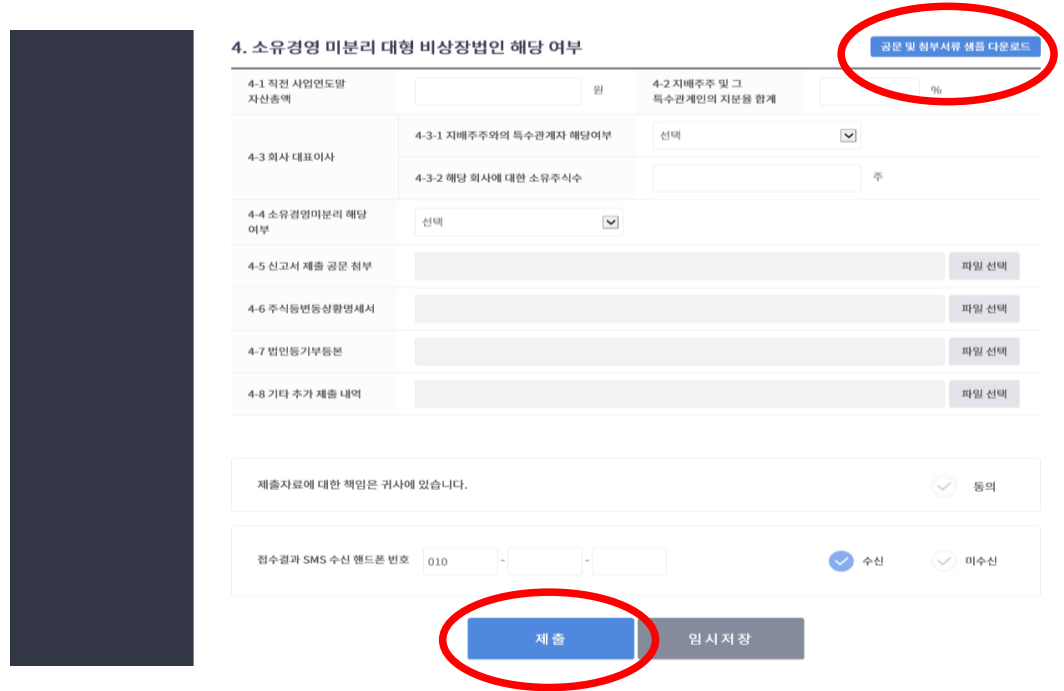
※ (예)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말인 '17.12.31. 이후 발생한 대표이사 변동현황을 모두 기재

◦ 해당 기간내에 대표이사 변동이 없더라도, 현재 대표이사의 취임일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기재

◦ 변동건이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재가능

(5)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4.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 해당여부를 작성합니다.

<소유경영미분리 여부 입력 화면>



- 1) (4-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재
 - * (예) 직전 사업연도가 '19.1.1.~'19.12.31.인 회사의 경우 '19.12.31.기준 자산총액을 기재
- 2) (4-2)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 기재
 - 2.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에서 기재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각 지분율을 합산하여 기재
- 3) (4-3) 회사 대표이사 기재
 - (4-3-1) 회사의 지배주주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택
 - (4-3-2) 대표이사 본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수를 기재
- 4) (4-4) 소유경영미분리 해당여부 기재
 - ①대표이사가 당해 회사주식을 1 주라도 보유한 상태에서 ②지배주주 본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으며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

5) 공문 및 제출서류 첨부

- (4-5)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탭을 이용하여 신고서 제출 공문 양식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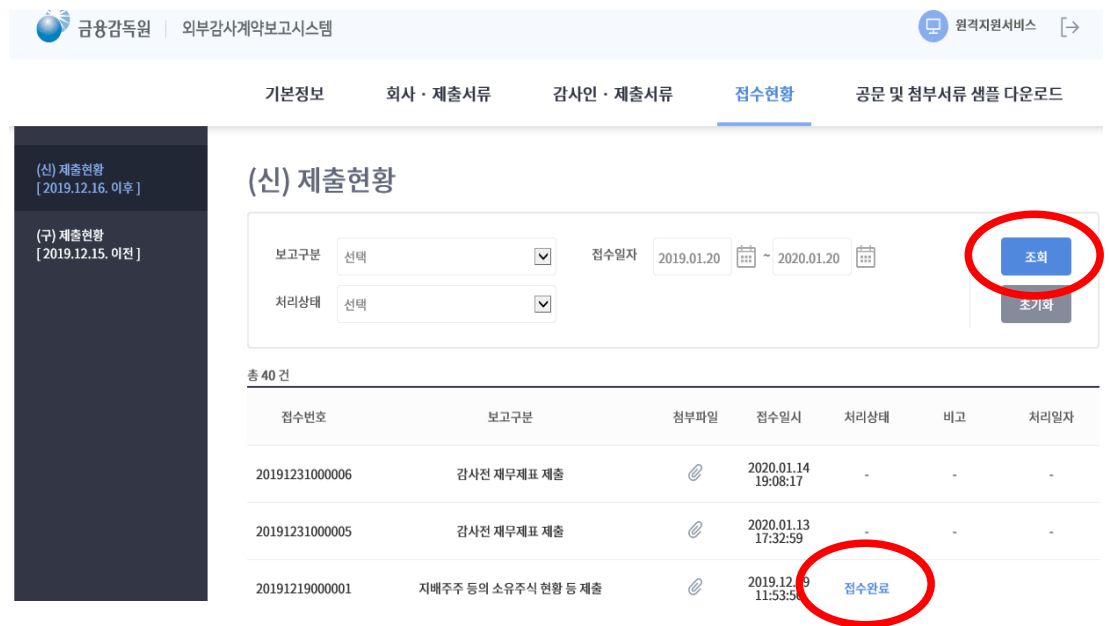
- (4-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82 조제 1 항제 52 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첨부

- (4-7)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를 제출

6) 제출책임을 확인 후 “동의”를 클릭하고, SMS 수신여부를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눌러 접수

(6) (접수현황 조회) [접수현황]에서 회사가 작성한 내용 및 첨부파일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현황 조회 화면>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원격지원서비스 [→]

기본정보 회사·제출서류 감사인·제출서류 **접수현황**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신) 제출현황 [2019.12.16. 이후]

(구) 제출현황 [2019.12.15. 이전]

(신) 제출현황

보고구분: 선택 접수일자: 2019.01.20 ~ 2020.01.20 **조회** 초기화

처리상태: 선택

총 40 건

접수번호	보고구분	첨부파일	접수일시	처리상태	비고	처리일자
20191231000006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2020.01.14 19:08:17	-	-	-
20191231000005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2020.01.13 17:32:59	-	-	-
20191219000001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2019.12.19 11:53:55	접수완료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 등 규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3월 중순 예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 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2.1%*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2.1% → 1.8%(△0.3%p),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3) 2.89 (‘14) 2.53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소득칙 §15 의 4)

< 시행령 개정내용(§38)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은 근로 소득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법인칙 §10 의 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 ○ 「민사조정법」에 따른 결정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이유> 「민사조정법」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4.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법인칙 §3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p style="text-align: center;">※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9년부터 K-IFRS1017호→제1116호로 개정</p>

<개정이유> K-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조특칙 §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요건의 기준시점 ◦ 자산총액: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 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 매출액: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매출액: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개정이유>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

6.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명확화 (조특칙§13의 5③~⑧, 별표 2, 별표 5의 2~5의 5, 별표 8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추 가> ◦ 안전시설 <추 가> <추 가> <추 가> ◦ 생산성향상시설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추가 ◦ 신기술 설비 추가 - 스마트조명, IE4 전동기 ◦ 대형사고 위험 시설 추가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의 안전시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시설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열수송관)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 ◦ 첨단물류시설 추가 및 스마트공장 시설 명시 - (물류) 지능형 물류창고, 물류 과정 자동화·지능화 설비 등 -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정보화시스템(APS), 제조실행시스템(MES), 공장원격관리시스템(SCADA) 등

<개정이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 및 스마트조명, 첨단물류시설 등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에너지절약시설)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영 시행일(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input type="checkbox"/>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 (좌 동)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 기존예규(재소비46015-41, 2002.2.8. 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

8.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기준(국조칙§2 의 3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6 의 2③) >

<input type="checkbox"/>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배제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통상적 용역거래의 경우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 해당 사업연도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시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 미적용 → 독립기업원칙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적용배제 기준 금액 ○ 거주자 매출액의 5%, 영업비용의 15% 중 작은 금액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저부가가치 용역 접근법의 적용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음 (서울세제-2127, 2020.02.10)

(사실관계)

- 2018. 8. 1. 합병법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승계받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 승계받은 부동산 중 구 건물을 2019. 5. 1. 멸실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 중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구 건물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감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음.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

-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 (" 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국조-3007, 2020.02.07)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동공구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으로 갑법인은 인도 법인에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2016.9.12.개정된 한·인도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질의요지)

- 2016.9.12. 개정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2조 【대상조세】 (2016.9.12. 개정·발효된 것)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계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여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인도의 경우, 소득세 (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인도의 조세"라 한다)
 - 나. 한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그리고
 - (3) 농어촌특별세

(회신)

-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 ("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Tax Tips: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새로 도입되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⑩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신청대상자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입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 전자(홈택스*), 세무서 민원봉사실 * 홈택스 경로-신청/제출→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연구”→조회하기→인터넷 신청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신청누락분은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연구개발보고서 ②연구개발비 명세서 ③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 사전심사 신청 대상은?

- 내국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①(기술검토)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②(비용검토)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내용은?

- 내국인이 지출한 또는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란?
이미 지출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임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말함
-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심사 방법은?

- 전화·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청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 사전심사 처리를 종결한 때에 「사전심사 결과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 합니다.
-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효력은?

- 신청인이 위 심사결과 통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일 : 2020.1.1.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

© 2020 Hanul LLC